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9. 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8. 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 8. 4.

다. 상정일자 : 제98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3. 9. 2)
상정, 심사, 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에 의하여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마포개발공사 사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천하게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마포개발공사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함.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 2) 추천하는 위원에 대하여 규정함
 - 경영전문가
 -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 공인회계사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 및 구소속공무원(구의원 포함)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토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6조)
- 사장후보의 추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1)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사장후보를 추천하도록 함
 - 2)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3)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0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제3조에서 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등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 및 구 소속공무원(구의회 의원 포함)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음.

구청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음.

안제8조에서 사장후보의 추천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제10조에서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공사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요청받은 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음.

0 동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2002· 3· 25법률제6665호) 제58조와 제61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2002· 6· 19대통령령제17629호) 제56조의2와 제56조의3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동조례(안) 제3조제1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안제2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약칭을 표기하였으므로 "구청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공사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인원이 7명인데 그중 구의회에서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안되는가?
- 답변요지(정원배 지역경제과장) : 구의원은 안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야 함.
- 질의요지(운동현 위원) :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행자부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인가?
- 답변요지(정원배 지역경제과장) : 지방공기업법과 행자부지침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것임.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한 이후 최종 결정방법은?
- 답변요지(정원배 지역경제과장) : 구청장이 추천받은 2인중 1인을 결정함.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3. 9. 2 윤정용 위원외 1인
- 나. 수정이유 : 안 제2조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 구청장" 이라 한다)에 대해 약칭을 사용하기로 규정했으므로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약칭사용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3. 9. 2.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 중 약칭사용 중복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생략)</p> <p>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 2인</p>	<p>제3조(위원회의 구성)①(현행과 같음)</p> <p>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p>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에 의하여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마포개발공사 사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천하게 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함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2) 추천하는 위원에 대하여 규정함

- 경영전문가
-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 공인회계사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 및 구소속공무원(구의원 포함)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나.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토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6조)

라. 사장후보의 추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1)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의 사장후보를 추천하도록 함
- (2)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3)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근거법령

- 가. 지방공기업법(2002.3.25 법률 제6665호) 제58조제3항 및 제4항
- 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2002.6.19 대통령령 제17629호) 제56조의2, 제56조의3 등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3. 5.20.~6. 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운영하는 마포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 2인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소속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구청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구의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공사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